

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달호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88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3월 25일

발 의 자 : 김달호, 김화숙, 이병도,
신정호, 임종국, 권수정,
이성배, 권영희, 박기재,
박순규 의원 (10명)

1. 제안이유

-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는 “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”로 장애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.
- 또한, 유엔의 “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(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)” 제29조는 장애인이 차별 없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공적 활동 수행에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.
- 아울러 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 제8조의 경우에도 “위원이 신체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

된 경우”라고 된 부분을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소지가 있어 “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”로 개정(‘16.2.3)한 바 있음.

- 이에 따라 현행 조례 제12조제1호 중 ‘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’라는 문구는 ‘장애가 ‘직무수행’을 가로막는다는 인식을 주어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는 만큼 ‘장애’라는 단어가 부각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한편,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서울특별시의회 보고 규정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명확하게 함(안 제3조 제2항).
- 장애인의 편견과 차별 소지가 있는 위원 위촉 해제 사유를 개정함(안 제12조제1호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, 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, 유엔 “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”

▣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

제6조(차별금지)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▣ 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

제8조(위원의 신분 보장)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. 다만, 위원이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.

▣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(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)

제29조(정치 및 공적 생활에 대한참여)

나. 장애인이 차별 없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공적 활동 수행에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고, 다음을 포함한 장애인의 공적 활동에의 참여를 장려할 것.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서울특별시의회(이하 “시의회”라 한다)에 보고”를 “서울특별시의회(이하 “시의회”라 한다)와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”로 한다.

제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노인·장애인·정신질환자·노숙인 등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무료노인급식 등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사회복지서비스사업

제8조제2항 중 “해태하거나”를 “게을리 하거나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① 시장은”을 “시장은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1호 중 “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”를 “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(생략) 1. ~ 9. (생략)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생산지 지방자치단체장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에게 통보하고, <u>서울특별시의회(이하 "시의회"라 한다)에 보고</u>한다.</p> <p>제4조(지원 대상) (생략) 1. ~ 2. (생략) 3. 「<u>사회복지사업법</u>」 제2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노인·장애인·정신질환자·노숙인 등 사회복지시설 및 <u>제2조 제6호에 따른</u> 무료 노인급식 등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사회복지서비스사업 4. ~ 6. (생략)</p> <p>제8조(지도 감독 등) ① (생략) ② 시장은 대상 기관의 장이 제7조의 의무를 <u>해태하거나</u>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.</p> <p>제9조(공공급식위원회의 설치) ① <u>시장</u>은 도농상생 공공급식의 지속적 추진과 확대 발전을 위한 정책 및 실행사항 등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공급식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</p>	<p>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(현행과 같음) 1. ~ 9. (현행과 같음)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생산지 지방자치단체장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에게 통보하고, <u>서울특별시의회(이하 "시의회"라 한다)와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</u>한다.</p> <p>제4조(지원 대상) (현행과 같음) 1. ~ 2. (현행과 같음) 3. 「<u>사회복지사업법</u>」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노인·장애인·정신질환자·노숙인 등 사회복지시설 및 <u>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</u> 무료 노인급식 등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사회복지서비스사업 4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8조(지도 감독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시장은 대상 기관의 장이 제7조의 의무를 <u>게을리 하거나</u> 지원 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.</p> <p>제9조(공공급식위원회의 설치) <u>시장</u>은 도농상생 공공급식의 지속적 추진과 확대 발전을 위한 정책 및 실행사항 등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공급식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</p>

현행	개정안
<p>제12조(위원의 위촉 해제) 시장은 제11조제4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.</p> <p><u>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</u></p> <p>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</p> <p>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</p> <p>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</p>	<p>제12조(위원의 위촉 해제)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1.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</u></p> <p>2.~ 4. (현행과 같음)</p>